완도군의회 공고 제 2023 - 23호

완도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

「완도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지방자치법」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3년 6월 8일

완 도 군 의 회 의 장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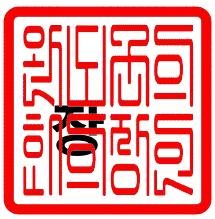

1. 조 례 명 : 완도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
2. 발 의 자 : 지 민 의원
3. 제정이유

○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
○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
○ 적용범위 및 추진계획 수립(안 제4조, 안 제5조)

○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(안 제6조, 안 제7조)

○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, 안 제9조)

5. 조례안 예고기간 : 2023. 6. 8. ~ 2023. 6. 14.

6. 의견제출

-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3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정지원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

(전화: 061-550-5933, FAX: 061-550-5907)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·전화·팩스·직접방문 등

7. 기타

○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팀(전화: 061-550-593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
2. 완도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안 예고명	완도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			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	
	주 소			
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				

「완도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」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제 출 자 (서명 또는 인)

완도군의회의장 귀하

완도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1인 가구”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·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.
2. “사회적 고립 가구”란 가족, 이웃,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.
3. “고독사”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·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,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.
4. “고독사 위험자”란 경제적·신체적·정서적·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.
5. “무연고 사망자”란 사망자 중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,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완도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하고,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5조(추진계획 수립) ① 군수는 매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
2. 사회적 고립 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
3. 사회적 고립 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
4. 성별, 연령,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
5. 사회적 고립 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
6.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
7.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실태조사)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

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,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7조(지원대상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·신체적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
2. 재가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 및 경제 상태,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
3. 읍·면사무소,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
4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

제8조(지원 사업)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
2.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 의료 지원
3. 가스·화재 감지기 및 응급 호출장치의 설치 지원
4. 방문 간호 서비스 및 구급 용품 지원
5.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 지원
6. 반찬 등 봉사 지원
7. 사물인터넷(IoT, Internet of Things)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서비스

8. 정부 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의 발굴·연계 서비스

9. 무연고 고독사에 대한 장례지원 서비스

10. 문화·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 사업

11.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「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, 응급의료기관,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·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조례의폐지)「완도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참고 **관계 법령 발췌**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,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